



공급업체 지속가능성 강령

서론

이 “공급업체 지속가능성 강령”은 스파이렉스 사코의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들(이하 “공급업체”로 칭함)에게 적용된다.

스파이렉스 사코 그룹에는 왓슨 말로우 그룹(Watson Marlow Group) 회사들과 스파이렉스 사코 자회사들(이하 “스파이렉스 사코”라 칭함)이 포함된다.

지속가능성은 스파이렉스 사코가 추구하는 “글로벌 공급망 우수성 프로그램”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스파이렉스 사코는 품질, 혁신, 고객 만족, 돈에 대한 가치 및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공급업체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 받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스파이렉스 사코의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필요와 기대치에 집중하고, 새로운 환경적, 사회적, 법적 및 경제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스파이렉스 사코는 최고 수준의 사업 운영 및 윤리를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글로벌 공급망 우수성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소싱과 조달이다. 그러므로 스파이렉스 사코는 “공급업체 지속가능성 강령”에 열거되어 있는 원칙들을 적용하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공급업체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 “공급업체 지속가능성 강령”은 우리의 공급업체와 그들의 하청업체들이 스파이렉스 사코와 함께 일할 때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표준을 제시한다.

범위

이 강령은 스파이렉스 사코와 거래하는 공급업체들에게 적용되며, 여기에는 이들의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 이들의 직원들(정규직, 임시직, 계약업체 및 이민 근로자 포함), 이들과 거래하는 공급업체 및 제 삼자들이 포함된다. 공급업체는 이 정보를 모든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교육할, 그리고 공급업체의 계열사, 직원, 공급업체, 대리점, 하청업체, 그리고 그 외 거래하고 있는 모든 제 삼자들이 이 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성실하게 확인할 책임이 있다.

지속가능성 정책

다음 항에 열거되어 있는 정책에 대해, 공급업체들은 최소한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 국제연합(UN) 세계인권선언
2. UN 글로벌 콤팩트 10개 원칙
3. 국제노동기구 기본 협약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행 원칙
5.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6. 국제상업회의소 행동 규칙
7. 영국 뇌물수수법 2010
8.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9. 영국 현대노예방지법 2015
10. 미국 프랭크-도드법(분쟁 광물)
11. 사업을 운영하는 해당 국가(들)에서의 활동에 적용되는 기타 국제 협약과 국내/현지 규정.

이 "공급업체 지속가능성 강령"에서 스파이렉스 사코가 설명하는 정책이 더 우선 될 경우, 먼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인권

공급업체는 특히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미성년 노동 금지: 공급업체는 해당 사법권에서 요구하는 최소 노동 연령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공식적으로 정부가 승인한 청소년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미성년 노동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 고용 관행, 채용 및 직업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차별 금지
- 최대 근로 시간, 최소 휴일 및 기타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과 관련해,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을 준수
- 최소 수준의 임금과 관련해,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을 준수
- 적용 가능한 법을 준수하여, 직원들의 결사의 자유 존중
- 해고와 관련해, 적용 가능한 법규정을 준수

위에 언급된 인권 쟁점에 더해, 공급업체는 아래의 조항도 준수해야 한다.

영국 현대노예방지법

스파이렉스 사코와 그 공급업체, 그리고 그 공급망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과 개인들은 영국 현대노예방지법(2015)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공급망 내 근로 관행에 있어, 공급업체들은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모든 유형의 불법적, 강요된 또는 강제적 노동, 노예 제도 및 노예 상태를 금지한다.
- 어떠한 개인도 강요, 협박 또는 속임수에 의해, 다른 이에게 어떠한 서비스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또는 다른 이가 어떠한 이익을 얻게 하도록 설득 받아서는 안 된다.
-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도 인신매매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인신매매는 다음을 의미한다.
 -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노동, 또는 노예 상태를 통해 착취되기 위해 이동 중인 개인을 모집/수송/이동시키거나, 숨겨주거나, 받아들이거나,

- 지배권을 이전하거나 교환, 또는 그러한 이동을 마련하거나 지원하는 일

미국 프랭크-도드법

스파이렉스 사코의 미국 고객들은 스파이렉스 사코가 제품에 포함된 광물이 인권을 침해하는 무장 단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프랭크-도드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광물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컬럼바이트 탄탈석(콜탄); 금;
석석; 철망간중석;
위에 언급된 광물들의 금속 유도체.

공급업체가 위에 언급된 광물을 제품 또는 생산에 사용할 경우, 해당 광물이 다음 국가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콩고 민주 공화국; 르완다;
앙골라; 남수단;
부룬디;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우간다; 또는
콩고; 잠비아.

공급업체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광물의 출처를 추적하고 그 결과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자신들의 공급업체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

2. 건강 및 안전

공급업체는 자신들의 활동이 직원들, 계약업체, 현지 지역사회 및 제품 사용자들의 건강에 안전하도록 해야 한다. 스파이렉스 사코는 공급업체의 운영 및 관리 시스템, 그리고 공급업체의 직원들이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환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기대한다. 공급업체의 활동과 관련된 위험이 파악, 평가 및 제거 또는 경감되어야 한다.

- 공급업체는 책임자가 승인하고 서명한 “보건 및 안전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공급업체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공급업체의 시설들은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이 제공하는 기준들에 따라 건축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 공급업체는 비상 상황에 대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훈련시켜 비상 계획 및 대응, 그리고 의료 관리에 대해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보유해야 한다.
- 공급업체는 직원들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질을 피해야 한다. 여기에는 EU의 REACH 규정(화학물질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에 관한)에 명시되어 있는 발암성, 돌연변이, 생식독성 물질(CMR)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적용가능한 법이 요구하는 품질 및 안전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스파이렉스 사코와 또는 이를 대신하여 사업을 할 경우, 공급업체는 반드시 스파이렉스 사코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공급업체는 환경,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여 제품의 총 수명 주기 동안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 보건 및 안전 영향을 없애거나 경감시켜야 한다.
- 공급업체는 자사의 제품이 유럽 지침 (2011/65/EU) RoHS II 및 유럽 규정 (1907/2006/EC)을 준수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공급업체는 모든 현지 및 국내 보건 &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가급적 OHSAS18001 인증을 받았거나 그러한 인증 과정 중에 있어야 한다.

스파이렉스 사코는 자사의 모든 현장, 또한 고객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모든 현장에서 작업할 때 공급업체는 현지 규칙을 준수하고 언제나 높은 수준의 직업 관련 건강/안전을 유지하도록 기대되며, 여기에는 모든 건강 및 안전 우려사항을 보고하고, 특정한 현장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고위험 활동에 대해 위험/방법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3. 환경 지속가능성

공급업체는 환경을 보존하고 자사가 천연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한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스파이렉스 사코는 공급업체가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환경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환경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한다.

공급업체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환경 허가 및 보고:** 요구되는 모든 환경 허가/등록증을 받고, 이를 최신으로 유지 및 관련된 보고 절차를 준수하며, 또한 언제나 법적인 준수 상태를 유지한다.
- **환경 경영:** 중대한 환경 영향을 파악, 관리 및 경감시키기 위한, 관련 환경 경영 시스템을 (ISO 14001:2004와 같은 국제 표준에 근거하여) 문서화하고 실행하며, 공급업체는 가급적 ISO50001 인증을 받았거나 그러한 인증 과정 중에 있어야 한다.
- **위험 물질:** 공급망 내에 있는 위험 물질 및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안전한 취급, 이동, 보관, 재활용, 재사용과 처리를 보장해야 한다. 위험 물질 및 화학 물질과 관련된 모든 적용 가능한 법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공급업체는 적용 가능한 법규정이 명시하는 물질 제한 및 제품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주요 직원들이 제품과 관련된 안전 관행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된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 **천연 자원:** 에너지 및 물을 포함한 천연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공급업체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실행하고, 고체 폐기물, 폐수 및 공기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해야 한다. 폐수 또는 고체 폐기물 방출 또는 처리 전에 공급업체는 그 특성을 파악하고 적용가능한 법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매립해야 하는 폐기물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시키지 않게 하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
- **제품:** 에너지 절약 및 재활용 솔루션뿐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기술 개발을 증진시키며, 또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유통 전략을 실행한다.

4. 윤리

공급업체는 자사의 활동 및 사업 환경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적용 가능한 윤리적 무역 법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또한 스파이렉스 사코와 함께 국제 협약을 준수한다.

특히 스파이렉스 사코는 공급업체로부터 다음을 요구한다.

- **경쟁:** 그룹의 경쟁법 정책에 명시되어 있는 공정 경쟁과 관련된 모든 적용 가능한 법규정을 준수
- **부패/뇌물방지:** 공급업체는 공개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그리고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적 혹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제 삼자로부터 기타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공급업체는 뇌물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사례금을 마련하거나 받아서도 안 되고,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영국 뇌물수수법을 포함한 모든 적용가능한 뇌물방지 법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 파트너에게 이를 위반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자금 세탁:** 자금 세탁과 관련된 모든 법을 준수한다. 스파이렉스 사코의 공급업체는 자금 세탁 관행을 지원하거나 이와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 **이해 충돌:** 공급업체는 이해 충돌로 여겨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스파이렉스 사코에게 보고하고, 스파이렉스 사코의 직원이나 계약 관계에 있는 전문 인력이 공급업체의 어떤 사업에 대해 이권이 있거나 그 밖의 경제적 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스파이렉스 사코에게 공개한다.
- **선물 및 후대:** 스파이렉스 사코의 직원들에게 선물이나 후대를 제공 하지 않는다. 스파이렉스 사코는 합리적이거나 수수하지 않은 그리고 형식적인 가치를 넘는 모든 선물이나 후대를 거부한다.
- **분쟁 광물:** 분쟁 광물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을 준수한다.
- **불만/고충 처리:** 공급업체는 익명의 불만/고충, 신고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지정된 책임자가 지속적으로 불만/고충 처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제기된 쟁점을 기록하며, 비밀을 보장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기록:** 공급업체는 적용 가능한 자재, 서비스, 정부 및 업계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장부 및 기록을 투명하게, 그리고 최신으로 유지하며, 스파이렉스 사코가 요청할 시 그러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 **원산지:** 공급업체는 자사가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1차 원산지(국가)의 잠재적 공급자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스파이렉스 사코는 공급망 준수성 평가를 위해 공급업체로 하여금 특정 시점에 원산지를 포함한 온전한 공급업체 관리 대장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 **인권:**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준수한다.

실행 및 확인

이 “공급업체 지속가능성 강령”은 스파이렉스 사코와 공급업체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공급업체는 이 문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경을 스파이렉스 사코에 알릴 책임이 있다.

스파이렉스 사코는 공급업체에게 이 “공급업체 지속가능성 강령”에 포함된 원칙을 자사의 공급업체들 및 계약업체들에게 전달하고, 유사한 지속적인 개선과 준수성 접근을 실행하게 할 것임을 진술, 보증 및 확약하도록 요구한다.

이 “공급업체 지속가능성 강령”을 준수함으로써 스파이렉스 사코의 각 공급업체는 이 “공급업체 지속가능성 강령”의 준수와 관련해 스파이렉스 사코에 의한 평가와 감사를 받아들인다.

스파이렉스 사코는 지속적인 개선 방법을 통해 공급업체와 장기적인 지속가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급업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행 계획을 함께 정의하고 수행한다. 공급업체는 지속 가능한 발전 분야에 있어, 성과 개선을 위한 실행 계획을 자유롭게 결정한다.

아래에 명시된 회사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자인 본인은 위 문서의 내용을 검토 및 이해하였고, 본인의 회사가 스파이렉스 사코의 “공급업체 지속가능성 강령”을 온전히 준수하고 있음을 확증한다.

회 사 명: _____

사업자번호: _____

주 소: _____

대 표 자 명: _____

직 책: _____

날 짜: _____

서명(또는 직인):

_____ (인)

원본에 서명하고 스파이렉스 사코의 관련 구매 담당 또는 책임자에게 송부한다.

이 문서는 서명한 날짜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다.